

대 전 대 정 공 공 지 원 민 간 임 대 주 택
공 급 촉 진 지 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1. 05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지구는 '90년대 초부터 추진된 대전 서남부신도시(現 도안신도시) 중, 개발이 완료된 1단계(택지개발지구), 개발 중인 2단계(지구단위계획) 및 갑천지구(친수구역)를 제외한 3단계 지역에 위치함.
-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3단계 지역 내 도안근린공원이 해제('20.07.01)되었고, 계획지구와 인접한 도안대로가 '22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민간 개발행위 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임.
- 따라서 3단계 지역 중 일부(도안근린공원 해제지역 및 도안대로 동측지역)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 등에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에 해당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 계획	가. 도시의 개발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8.01.16., 시행 2018.07.17.)으로 제22조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1.2.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3]의 【1. 도시의 개발사업】의 종류 중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 25만㎡ 이상인 사업”에 해당됨.

〈표 1-2〉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8.01.16., 시행 2018.07.17.)으로 제22조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1.2.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근거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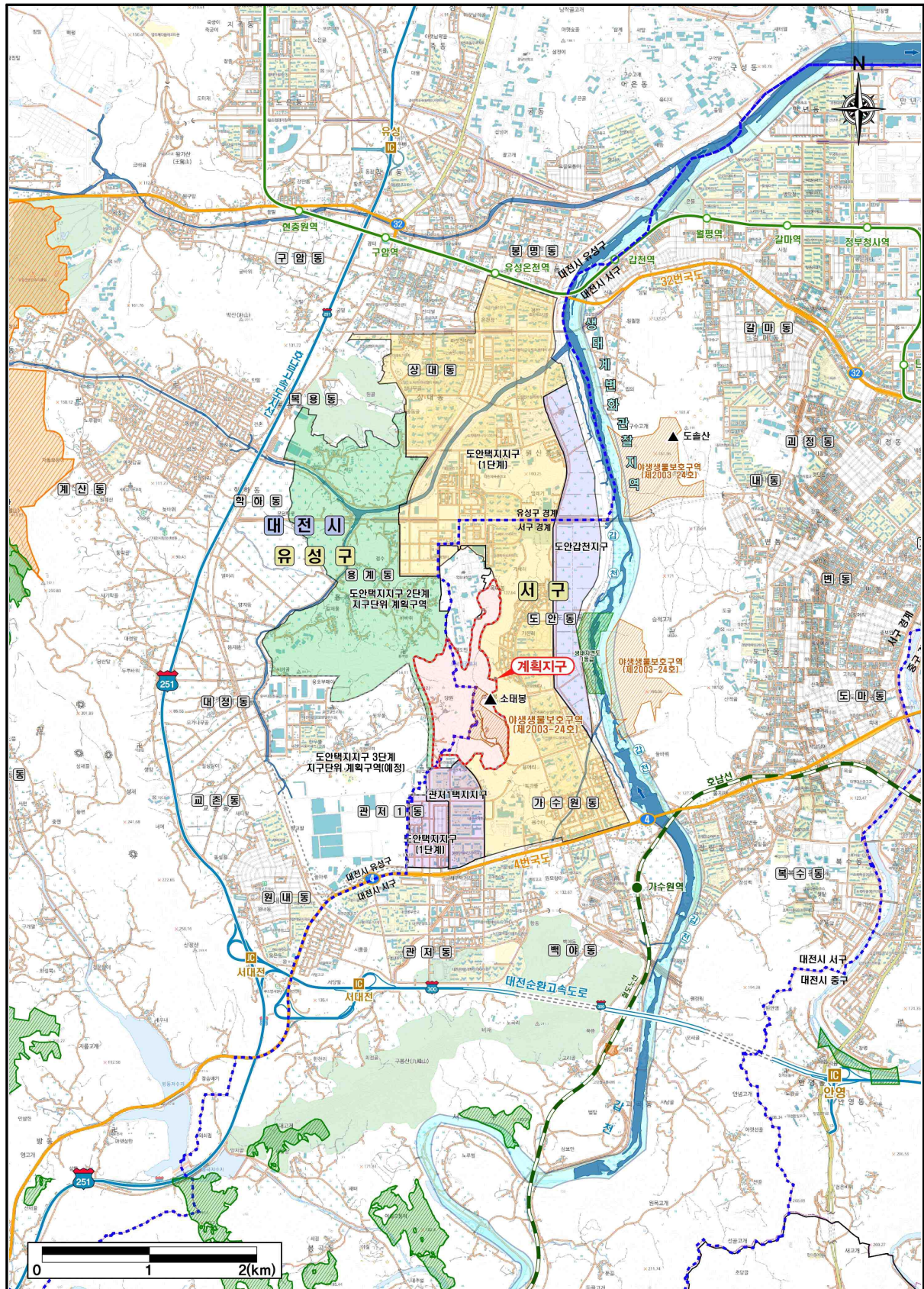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의거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 따라 작성함.

1.3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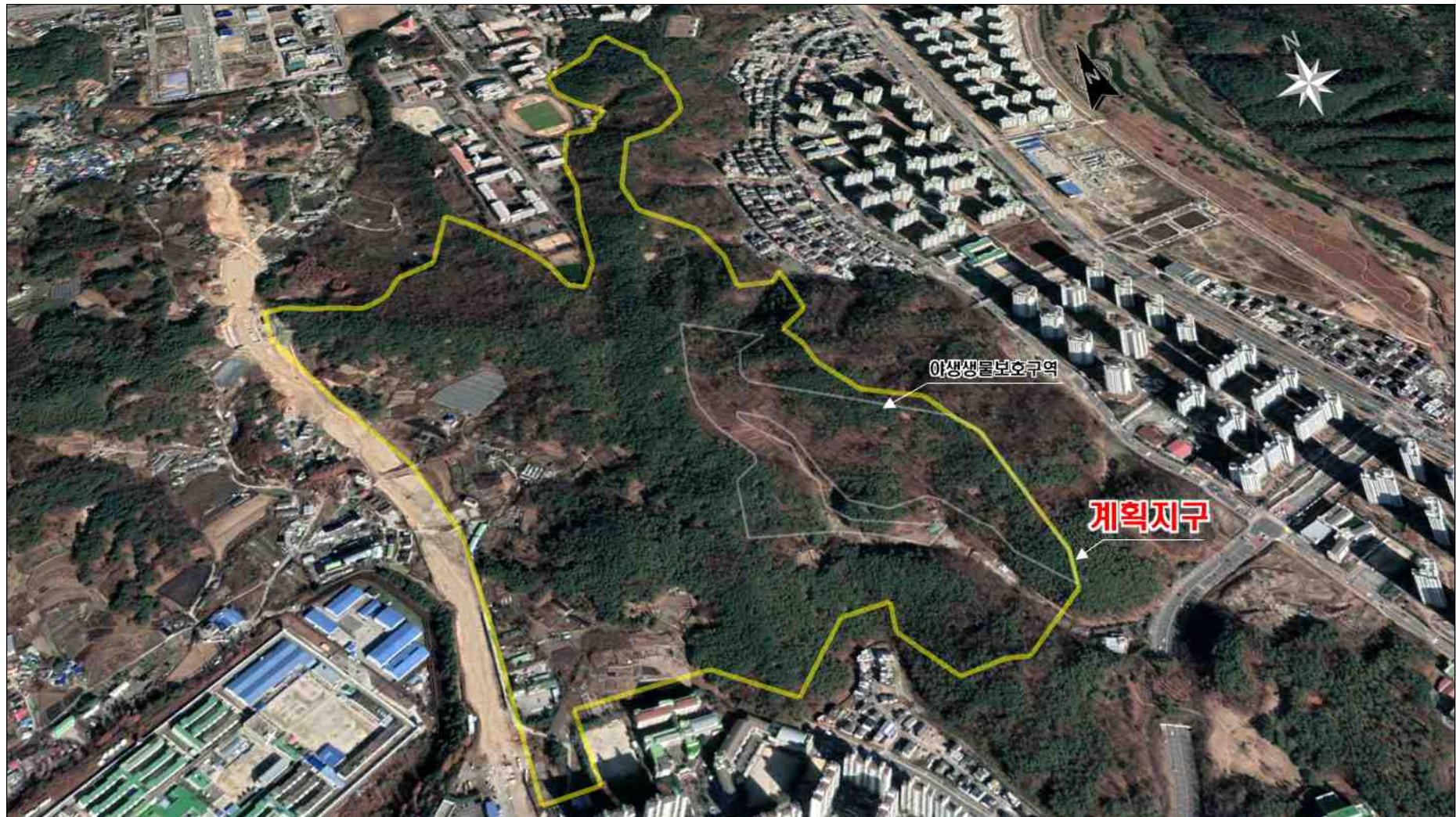
- 계 획 명 : 대전대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계 획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도안동, 가수원동, 관저동 일원),
유성구(대정동, 용계동 일원)
- 계 획 면 적 : 820,352m²
- 계 획 인 구 및 세 대 : 5,546인(2,351호)
- 계 획 기 간 : 2022년 ~ 2030년
- 계획수립기관(지정·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1.4 계획의 추진경위

- ‘18.10.11 : 대전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
(984천m², 시가화유보기간 10년 연장) (대전시고시 제2008-191호)
- ‘20.07.01 : 도안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보전녹지 고시
- ‘21.02.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그림 1-1) 계획지구 위치도



(그림 1-2) 계획지구 현황(1/2)



(그림 1-2) 계획지구 현황(2/2)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계획수립기관(지정·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2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1. 04. ~ 2021. 05.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표 2.1-1〉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련 조항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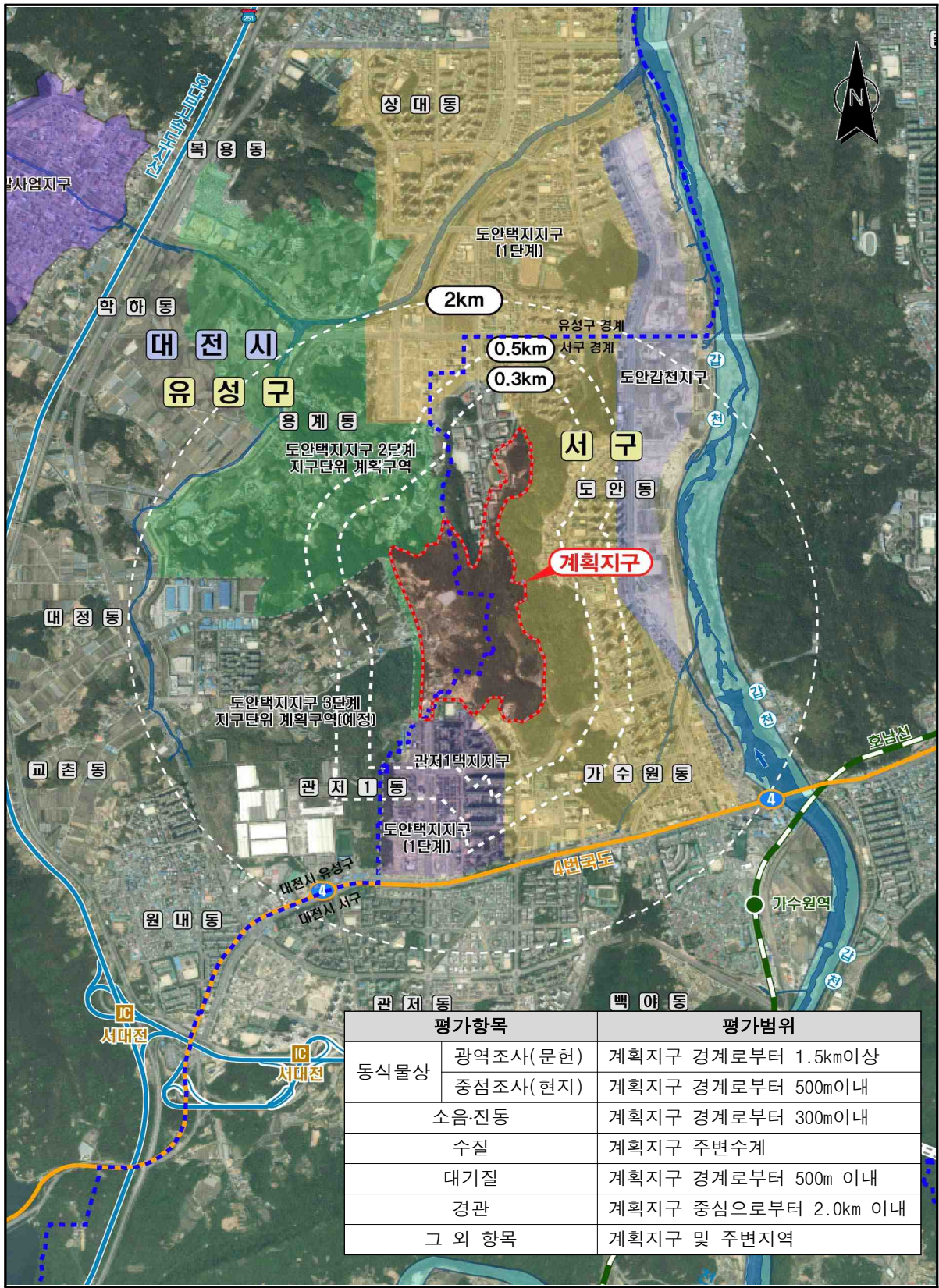
2.2.1 대상지역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대상지역 설정은 본 계획의 시행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 2020. 12. 2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사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광역조사(문헌)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5km이상	○ 계획시행으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과 관련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자연생태분야 광역조사(문헌)범위(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 9개격자 11x14km²) 및 중점조사(현지)범위(포유류, 조류 등) 적용
				중점조사(현지)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지구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 변화 예상 ○ 생태축 단절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지구 중심으로부터 2.0km 이내	○ 지형변화, 공동주택 입지 등 계획 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의 영향검토 범위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의 조망점 선정범위(면적사업)
	생활환경의 안정성	수환경의 보전	수 질	계획지구 주변수계	○ 공사시(토사유출) 및 운영시(오수, 비점오염물질) 오염물질 발생과 관련한 해당 수계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의 ‘택지개발 사업’ 평가범위 설정 기준
			온실가스	계획지구	○ 공사시 장비가동 및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토양	계획지구	○ 토양오염원 및 토양오염물질의 발생과 관련한 계획지구 내
		환경기준의 부합성	소음·진동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공사시 장비가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정온시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지구	○ 공사시(폐유, 건설폐기물) 및 운영시(생활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계획지구 내
	사회·경제환경과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지구	○ 계획시행 시 토지이용의 변화와 관련한 계획지구 내
		일조장해		계획지구 주변지역	○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일영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
		인구·주거		계획지구	○ 계획시행과 관련하여 인구·주거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범위



(그림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나. 환경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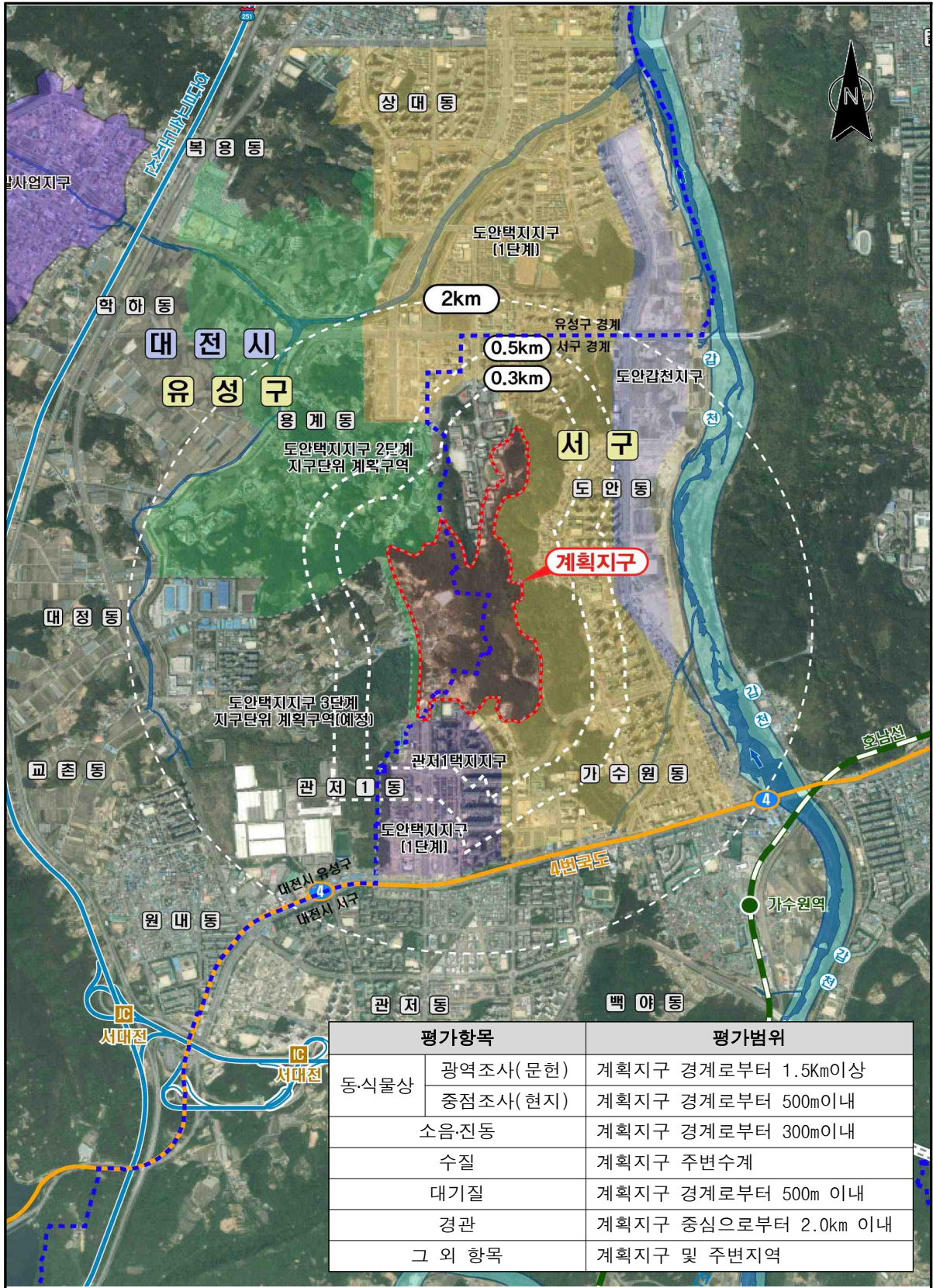
- 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 2020. 12. 2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 등을 참고하였음.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의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1/2)

구 분		평가 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비 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광역조사 (문헌)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5km이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광역적인 차원의 영향예측과 사업대상지 일원의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역적 생태계의 개황과 특성 조사가 필요한 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중점조사 (현지)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동·식물상 생활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광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군별 조사실시 및 실질적인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자 산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기 환경	기 상	계획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대기질 예측에 기초자료로 이용 ◦ 건축물 배치에 따른 바람길(통풍) 확보 등 국지적 기상 영향 예상 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 기 질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 먼지, 배기가스 발생으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계획지구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토지이용변화 및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 공사시 ◦ 운영시

〈표 2.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2/2)

구 분		평가 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비 고
수 환 경	수 질 (수리·수문)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공사시 - 운영시
	토지이용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적 토지활용 계획 수립	- 공사시 - 운영시
토 지 환 경	토 양	계획지구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공사시
	지형·지질	계획지구	- 흙쌓기 및 흙깎기 발생으로 지형변화 지역 -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공사시
생 활 환 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지구	-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소음·진동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영향 예상지역	- 공사시 - 운영시
	경 관	계획지구 중심으로부터 2.0km 이내	주변 지역과의 경관영향 발생 지역 (토지이용변화 및 공동주택, 건축물 입지 등)	운영시
	일조장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사 회 · 경 제 환 경	인구·주거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운영시



(그림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2.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선정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계획 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조정, 시기·순서, 기타 등 6개의 종류로 구분함.
-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 종류를 선정하여 대안검토를 실시하고, 환경적 측면, 안정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설정하고자 함.
- 대안선정방법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의미함.
 - 관계행정기관장은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대안을 선정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안을 선정할 때는 행정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함.

〈표 2.2-3〉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기준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계획수립 여부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토지이용 비교
입지조정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구역계 비교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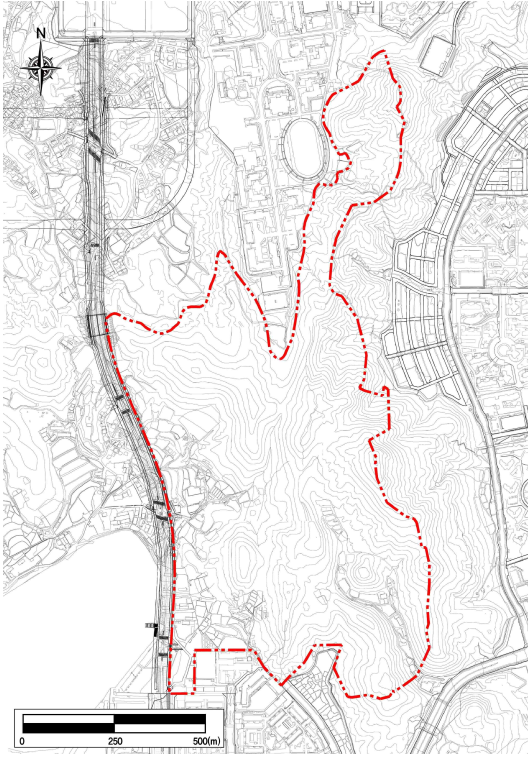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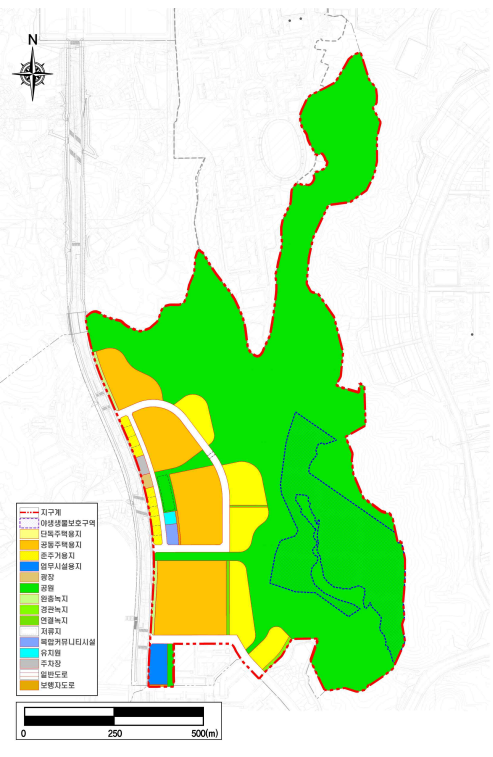
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나. 대안설정 대안의 비교·검토

1) 계획비교(Aciton, No action)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 및 수립 시(Action) 대안별 환경적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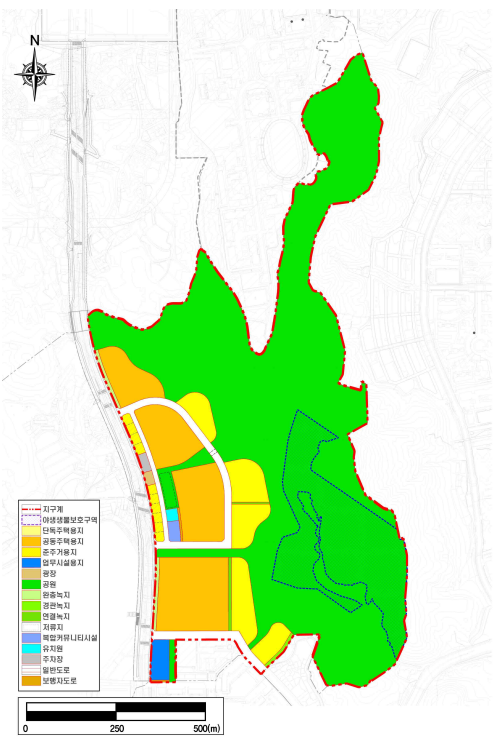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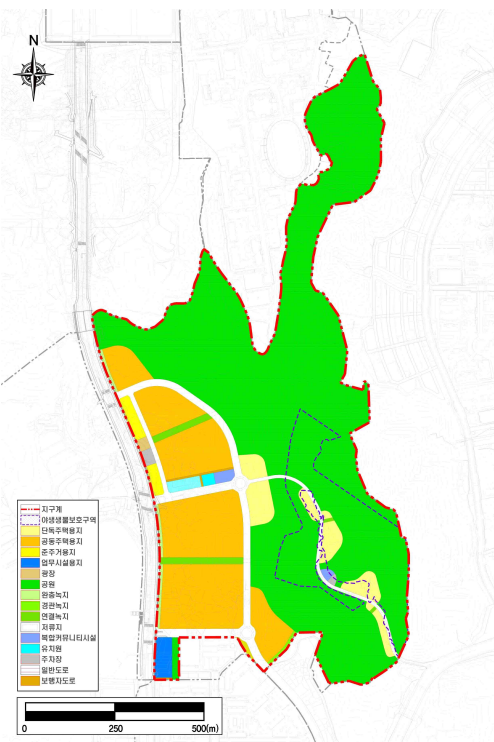
<표 2.2-4> 계획비교(Aciton, No action)

구분	대안1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No Action)	대안2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Action)
개요	• 현 상태 유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장점	◦ 현 상태 유지 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 없음	◦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 ◦ 환경관련보호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의 현상태 유지 및 주변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점	◦ 계획지구는 장기미집행 해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별도의 계획 미수립시 소규모 개발 난립 우려	◦ 공사시 및 운영시에 대기오염물질, 오수, 소음발생 등 생활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개발계획 수립 요구

2)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검토

- 계획지구의 토지이용계획(안) 및 계획세대수 등을 수요·공급 대안으로 제시 하였으며, 본 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2-5〉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비교표(토지이용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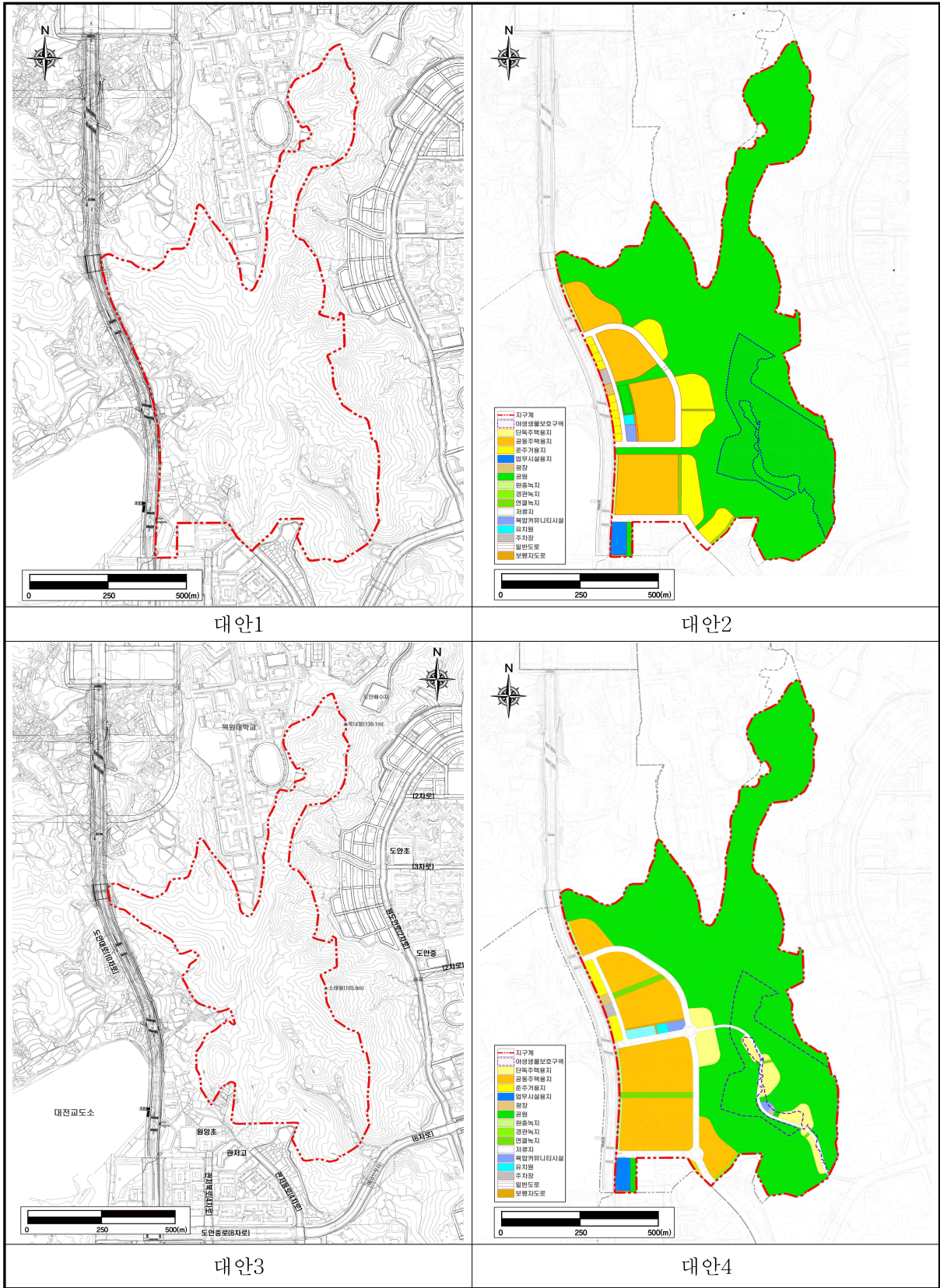
구 분	대안2 (계획세대수: 2,351세대 ,주택용지 820,352 m ²)	대안4 (계획세대수: 2,898세대 ,주택용지 820,352 m ²)
토지이용 계 획		
장·단점	○ 가처분용지 비율을 다소 낮추고, 원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수립 ○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현 상태 유지하고, 주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기능 (저층·저밀도 단독주택) 배치 ○ 도안대로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해 연도형 상업기능 배치 ○ 도안신도시 전체 녹지체계를 고려한 녹지축 형성 ○ 관저동로와 교통 연계성이 부족하여, 도안대로에 통행량 증가 예상	○ 가처분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세대수가 많음. ○ 야생생물보호구역 계곡부 일부를 주거 용지로 활용하여 생태계 영향이 발생하며, 옹벽 및 사면 발생 등 지형변화 예상 ○ 도안대로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해 연 도형 상업기능 배치 ○ 도안신도시 전체 녹지체계를 고려한 녹지축 형성 ○ 내부 가로망을 관저동로와 접속하여 교통연계성 향상

3)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

- 본 계획지구가 조성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안근린공원)의 해제부지 외에 추가부지 편입여부에 따른 2가지 입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검토함.

<표 2.2-6> 입지 대안 검토

구분	대안2 (A=820,352m ²)	대안3 (A=669,070m ²)																			
개요																					
	<table><tr><th>구분</th><th>지구계 결정사유</th></tr><tr><td>1</td><td>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경계</td></tr><tr><td>2</td><td>도안택지지구(1단계) 경계</td></tr><tr><td>3</td><td>관저1택지지구 경계</td></tr><tr><td>4</td><td>원양초교 경계</td></tr><tr><td>5</td><td>도안지구(2단계) 경계 (도안대로 경계중복)</td></tr><tr><td>6</td><td>경계 정형화</td></tr></table>	구분	지구계 결정사유	1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경계	2	도안택지지구(1단계) 경계	3	관저1택지지구 경계	4	원양초교 경계	5	도안지구(2단계) 경계 (도안대로 경계중복)	6	경계 정형화	<table><tr><th>구분</th><th>지구계 결정사유</th></tr><tr><td>1</td><td>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및 장기미집행 해제공원 경계 유지</td></tr><tr><td>2</td><td>경계 정형화</td></tr></table>	구분	지구계 결정사유	1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및 장기미집행 해제공원 경계 유지	2
구분	지구계 결정사유																				
1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경계																				
2	도안택지지구(1단계) 경계																				
3	관저1택지지구 경계																				
4	원양초교 경계																				
5	도안지구(2단계) 경계 (도안대로 경계중복)																				
6	경계 정형화																				
구분	지구계 결정사유																				
1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및 장기미집행 해제공원 경계 유지																				
2	경계 정형화																				
장 단 점	◦ 기 해제된 장기미집행공원(도안공원)부지 외 인접 택지지구 경계에 접한 추가 부지를 편입 ◦ 도안대로, 관저동로, 도시철도2호선(예정) 등 도시계획시설간 접근성 양호 ◦ 지구 정형화 및 도로 연접으로 인해 주택 용지 확보 용이 ◦ 보전녹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비율 증가	◦ 기 해제된 장기미집행공원(도안공원)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여, 추가편입용지 미발생 ◦ 계획지구가 도안대로와 이격되어 위치 하므로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 필요 ◦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양호한 임상의 산지 일부 훼손 필요 ◦ 보전녹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비율 감소																			



(그림 2-3) 대안설정도

2.2.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 2020. 12. 22, 환경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2-7〉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및 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주요 검토내용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한 대안제시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환경의 보전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의 현황파악 • 흙깎기·흙쌓기에 따른 지형 변화 • 공동·단독주택 등 건축물 입지에 따른 경관 변화 검토 • 공사시 부유물질 발생으로 인한 수계 영향 및 대책 수립 • 운영시 토지계 변화에 따른 비점오염 물질 발생 및 대책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에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검토 • 공사시 폐유 및 건설폐기물 발생 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인구 및 주거	• 지구계 설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인구·주거 변화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등의 설정

-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 예측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2-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1/2)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계획의 적정성			- 대전광역시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광역 조사 (문헌)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5km이상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현황 조사(법정보호종 포함) -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육상곤충류, 양서·파충류, 어류, 담수무척추동물 등 - 계획수립으로 인한 동·식물상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동·식물상
			중점 조사 (현지)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지구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수립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및 안정성 검토 - 입지에 대한 표고·경사 분석 - 토공계획 분석 -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현황파악	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지구 중심으로부터 2km 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공주택 등 건축물 입지에 따른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경관
		수환경의 보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수질오염현황 조사 - 토사유출 영향 검토 - 비점오염물질 처리방안	수질

〈표 2.2-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2/2)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500m 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대기현황 조사(500m 이내) - 소음·진동현황 조사(300m 이내) - 토양오염현황 조사 • 환경기준에 부합여부 검토 및 목표기준 설정 • 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 환경영향 및 누적환경영향 예측 •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	대기질 (500m), 소음·진동 (300m), 토양 (계획지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 계획지구 연계성 검토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 수립으로 인한 폐기물, 분뇨 등 발생량 및 처리방안 검토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지구계 설정의 적정성 • 주변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 • 인구 및 주거 변화 예측	토지이용, 인구·주거
		인구 및 주거			

나.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환경영향요소는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사업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과의 관계를 행렬식 대조표로 작성하였음.

〈표 2.2-9〉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환경영향요소			자연 생태 환경		대기환경				수 환 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동·식물상	자연경관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환경·지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인구·주거
공사 단계	자연 환경 변경	지형변화	▲	▲						▲	▲	▲			▲		
		산림벌채	▲	▲				▲							▲		
		사면발생	▲						◆			▲			▲		
		토지점용		▲				▲		▲							
	토공 기초 작업 및 시설물 공사	건설장비 운영	▲			◆		▲			▲		▲	◆			
		토사이동				◆			◆								
		토공기초 작업				◆											
		건축물 공사	▲			◆		▲			▲			◆			
		폐기물 발생									▲		▲				
		공사인부 투입							▲				▲				
운영 단계	도로 이용	배기가스 발생	▲					▲									
		도로소음 발생	▲											▲			
	주 택 입 지	폐기물 발생	▲				▲				▲		▲				
		오염물질 발생				▲											
		오·폐수 발생							◆				▲				
		건축물 입지			▲						▲				▲	▲	
		시설물 준치	○					△			△						
	지 역 개 발	주거환경 변화								○							○
		지역경제 변화								○							○

주)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 기준

◎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효과는 미약하다.

▲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 악영향이 크다.

비고) 미선정 항목(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위락, 산업, 전파장해 등)은 제외함.

2)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20-289호), 2020. 12. 22, 환경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2-10〉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및 사유(1/2)

분 야	항 목	선정결과			선정결과에 대한 사유
		중점	현황	제외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공사 및 운영시 동·식물상(보호대상 동·식물 등) 영향예측 및 대책
	자연환경자산	-	○	-	• 기존문헌 등을 통한 계획지구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대기 환경	기상	-	○	-	• 계획지구 주변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	-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차량 및 시설 등 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취	-	-	○	• 본 계획지구 주변 공장 등 대규모 악취발생원은 위치하지 않으며, 본 계획 내 악취배출시설 또한 계획되어 있지 않음.
	온실가스	○	-	-	• 공사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수환경	수질	○	-	-	• 공사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로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운영시 오수,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적정처리 대책
	수리·수문	○	-	-	• 토지이용 변화 등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검토
	해양환경	-	-	○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표 2.2-10〉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및 사유(2/2)

분 야	항 목	선정결과			선정결과에 대한 사유
		중점	현황	제외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 위치·규모 등에 관한 대안 검토·선정
	토양	○	-	-	• 계획지구의 토양오염 현황 및 운영시 토양오염 요인 파악
	지형·지질	○	-	-	• 지형·지질 현황조사 및 흙깎기·흙쌓기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및 적법 처리대책 수립
	소음·진동	○	-	-	• 공사시 공사 장비투입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 운영시 주변 도로 및 내부도로 이용 차량 운행 등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위락	-	-	○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경관	○	-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 분석
	위생· 공중보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없음.)
	전파장해	-	-	○	• 현 단계 본 계획지구 주변 고압송전선로, 변전소, 케이블헤드 등 전파장해 발생시설물은 위치하지 않으며, 본 계획 내 해당시설은 계획되어 있지 않음.
	일조장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분석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 및 주거현황 파악
	산업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미미

3)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2-1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1/2)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광역조사 (문헌)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5km이상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현황조사 (법정보호종 포함) -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육상곤충류, 양서·파충류, 어류, 담수무척추동물 등 •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중점조사 (현지)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	
	자연환경 자산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 현황조사 및 영향 검토 -
대기환경	기 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10년 기상자료 분석 및 영향 검토 -
	대 기 질	• 계획지구 경계로 부터 500m 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대기질 현황 조사 • 공사시 토사이동 및 공사차량에 의한 대기영향 예측(모델링 활용) 및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지구 내 연료사용, 도로 차량 운행 등에 따른 대기영향을 모델을 이용한 정량적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온실가스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연료사용 및 산림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현황 예측
수 환 경	수질 (수리·수문)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수질오염현황 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오수,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

〈표 2.2-1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2/2)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토지환경	토지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	-
	토양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지형·지질	• 계획지구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 토공계획 검토	• 공사시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 공사시 • 운영시
	소음·진동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소음·진동현황 조사 •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운영시 주변 소음원(도로, 철도) 및 계획지구 내부도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 검토	• 공사시 • 운영시
	경관	• 계획지구 중심으로부터 2km 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검토	-
	일조장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거시설의 일조권 확보 검토	•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인구 유입 및 주거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 운영시

2.2.4 환경현황 조사계획

가. 조사목적

-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질 조사는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조사계획

1) 조사지점

- 환경질 조사지점은 사업계획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계획지구의 주변 환경, 수계, 정온시설 등 영향예상지역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2) 조사횟수

- 환경질 조사횟수는 계절별 조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총 4회(전략환경영향평가 2회, 환경영향평가 2회)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동식물상 조사횟수는 분류군별 생육이 왕성한 시기를 고려하여 4계절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각각 2계절씩)를 실시할 계획임.

〈표 2.2-12〉 환경질 및 동식물상 현지조사계획

구 분	조 사 항 목	항목수	조사횟수		조사 지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 기 질	○ SO ₂ , CO, NO ₂ , PM-10, PM-2.5, O ₃ , Pb, 벤젠	8개	2회	2회	7지점
지표수질	○ pH, BOD, SS, DO, 총대장균군수, Cd, As, CN, Hg, 유기인, Pb, Cr ⁺⁶ , PCB, ABS, COD, T-P	16개	2회	2회	2지점
지하수질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수, Pb, Hg, As, Cd, Al, Cu, Zn, Fe, Mn, Cr ⁺⁶ , NO ₂ -N, Cl ⁻ , SO ₄ ²⁻ , NH ₃ -N, 페놀, 경도, KMnO ₄ 소비량, pH, 맛, 냄새, 색도, 중발잔류물, 탁도	25개	2회	2회	2지점
토 양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Cd, Cu, Ni, Zn, Pb, As, Hg, Cr ⁶⁺ , F ⁻ , 유기인화합물, PCBs, CN, 페놀, 벤조피렌, TCE, PCE, 1,2디클로로에탄	22개	2회	2회	3지점
소음·진동	○ 소음 - 주간 4회, 야간 2회 ○ 진동 - 주간 2회, 야간 1회	2개	2회	2회	5지점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7개	2회	2회	계획지구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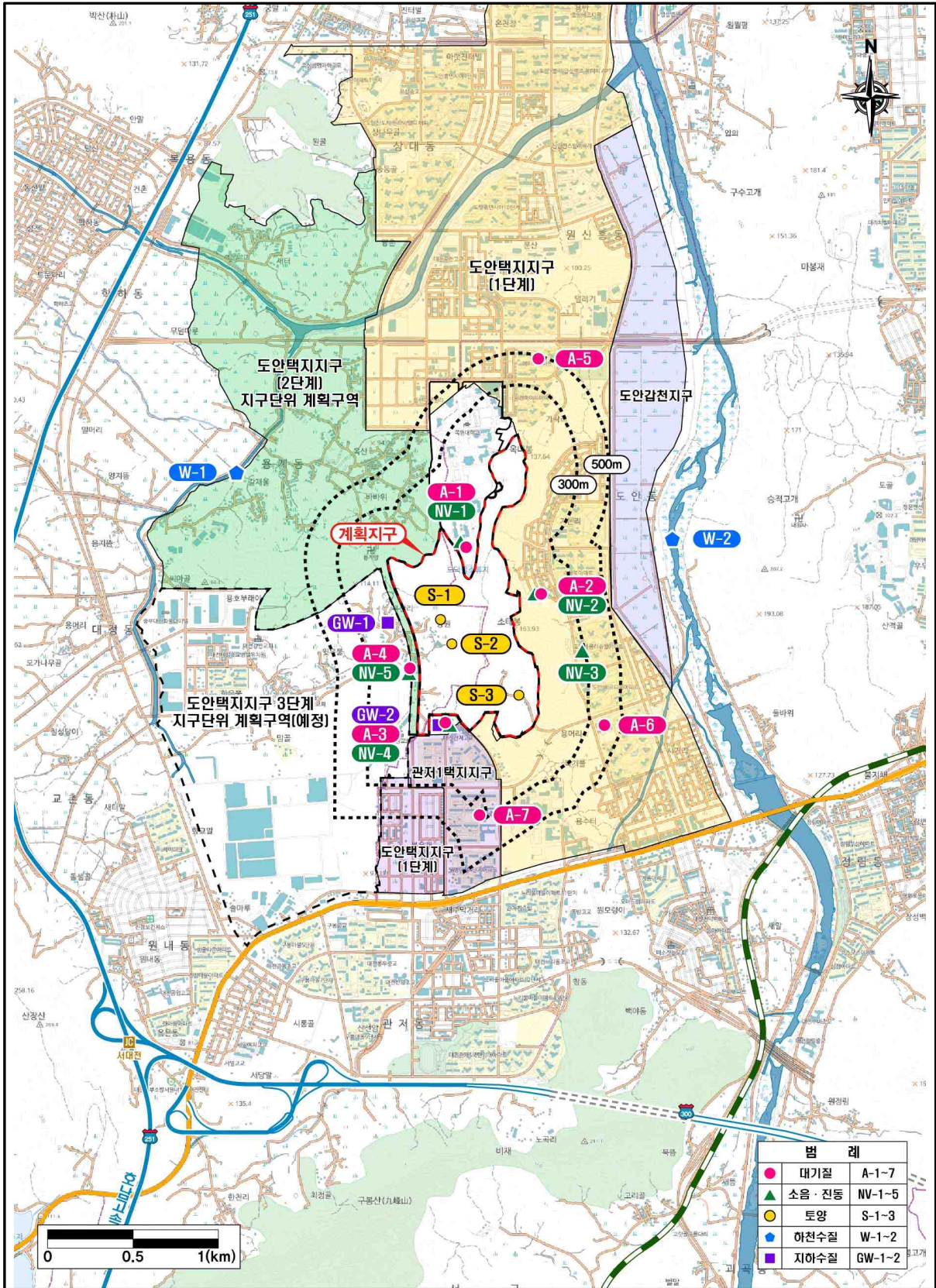
〈표 2.2-13〉 환경질 조사지점별 위치 및 선정사유

구 분		조사지점	선정사유	비 고
대기질	A-1	대전시 서구 도안동 653-6 (목원대학교)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주요정온시설	교육시설
	A-2	대전시 서구 원도안로179번길 56 (좋은교회)		종교시설
	A-3	대전시 서구 관저북로 97 (원양초등학교)		교육시설
	A-4	대전시 유성구 한우물로 169 (기혼교회)		종교시설
	A-5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125(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주거지역
	A-6	대전시 서구 원도안로 80 (도솔초등학교)		교육시설
	A-7	대전시 서구 관저동로 161 (관저초등학교)		교육시설
지표수질	W-1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590	계획지구 내 직접적 연결수계가 없어 사업지구 외부 현황파악을 위한 지점선정	진잠천
	W-2	대전시 서구 도안동 789		갑 천
지하수질	GW-1	대전시 유성구 한우물로155번길 44	지하수 유동을 고려한 계획지구 서측의 지하수 이용시설	음용수
	GW-2	대전시 서구 관저북로 97 (원양초등학교)		생활용수
토 양	S-1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1-2	계획지구 내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지장물)주변	계획지구 내부
	S-2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11-2		
	S-3	대전시 유성구 가수원동 산 1-20		
소음·진동	NV-1	대전시 서구 도안동 653-6 (목원대학교)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이내의 주요정온시설	일반지역
	NV-2	대전시 서구 원도안로179번길 56 (좋은교회)		도로변지역
	NV-3	대전시 서구 도안동로 123 (도안리슈빌아파트)		도로변지역
	NV-4	대전시 서구 관저북로 97 (대전원양초등학교)		일반지역
	NV-5	대전시 유성구 한우물로 169 (기혼교회)		일반지역

주) 측정지점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조사방법

-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조사 및 분석 방법에 준하여 실시할 계획임.



(그림 2-4) 환경질 조사지점도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 협의회에서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가) 초안 공고 및 공람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 공고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공람할 것임
- 공고시점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공고방법 : 전국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 공람기간 및 장소,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공람기간 : 20일~40일 범위에서 공람(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나)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시점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 일간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공고 : 초안 공고(일간 및 지역신문)시 설명회 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개최장소 : 설명회 개최 장소는 추후 협의 후 결정

다) 주민설명회 생략

-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법 13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설명회 생략 공고 후 설명회에 준하는 방법(주민의견제출서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 설명회 생략공고는 다음과 같이할 계획임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라) 공청회 개최

-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계획임.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마) 공청회 생략

-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법 13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청회 생략 공고 후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주민의견제출서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공청회 생략공고는 다음과 같이할 계획임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의거하여 협의회에서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승인기관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www.eiass.go.kr)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가) 초안 공고 및 공람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공람할 계획임
- 공고시점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공고방법 : 전국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내용 :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람기간 : 20일~60일 범위에서 공람(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나)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시점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 일간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공고 : 초안 공고(일간 및 지역신문)시 설명회 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개최장소 : 설명회 개최 장소는 추후 협의 후 결정

다) 주민설명회 생략

-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법 2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명회 생략 공고 후 설명회에 준하는 방법(주민의견제출서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 설명회 생략공고는 다음과 같이할 계획임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라) 공청회 개최

-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계획임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마) 공청회 생략

-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법 2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청회 생략 공고 후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주민의견제출서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 공청회 생략공고는 다음과 같이 할 계획임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